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발의년월일 : 2008. 1.

발 의 자 : 정해원 위원 외 6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절차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법령의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에 응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 제3항).
- 나.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(안 제8조의2, [별표]).
- 다.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절차를 규정함(안 제8조의3).
- 라. 「지방자치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법령의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입법예고 : 생략
- 라. 협의사항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”로 하고, “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9조의 2”를 “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영 제17조의2”를 “영 제41조”로 한다.

제3조제6항 중 “영 제17조”를 “영 제40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”를 “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”로, “법 제108조 및 제111조”를 “법 제117조 및 제120조”로, 동조동항제3호 중 “법 제137조”를 “법 제146조”로, 동조동항제4호 중 “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”을 “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”으로 하고, 동조동항제5호 중 “지방공기업법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”으로 한다.

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과태료 부과) ①제8조제1항 및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.

제8조의3(고발의 절차) ①의회는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피고발인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.

제10조 중 “영 제18조제1항”을 “영 제5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영 제17조의7”을 “영 제46조”로 하고, “영 제17조의8”을 “영 제47조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 부과기준(제8조의2 관련)

위 반 행 위 별	금 액
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	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
출석요구 불응 2회	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
출석요구 불응 1회	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
증언거부	200만원 이하

※ 비고 :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 불출석을 말한다.

<p>회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.</p>	<p>----- -----.</p>
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</p>	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</p>
<p>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①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마포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</p>	<p>2.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----- -----법 제117조 및 제120조-----</p>
<p>3. 마포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</p>	<p>3. -----법 제146조----- -----</p>
<p>4.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</p>	<p>4.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5.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. 공단외의 출자. 출연법인중 마포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마포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</p>	<p>5. 「지방공기업법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8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</p>	<p>제8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</p>
<p>①~② (생략)</p>	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

<p><신설></p>	<p>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8조2(과태료 부과) ①제8조제1항 및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8조3(고발의 절차) ①의회는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③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피고발인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.</p>
<p>제10조(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)</p>	<p>제10조(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)</p>

<p><u>영 제18조제1항</u>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<u>영 제17조의7</u>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, <u>영 제17조의8</u>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p>	<p><u>영 제50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1조(징계) ----- --- <u>영 제46조</u>----- ----- -----<u>영 제47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	--